

# 최신 판례 예규

## Marketing Tax

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 
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안됨

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

서면법규재산-4847, 2022.12.13

### ■ 질 의

- 장기임대주택(B주택)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020.8.18. 전에 멸실된 후,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주택(B'주택)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임대등록하지 못하는 경우
- 소득령 § 155<23>에 따라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(A주택) 양도 시 소득령 155<20>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
### ■ 회 신

귀 서면질의의 경우,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(변호사,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)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

서면법인-4128, 2022.12.08

### ■ 질 의

- 질의법인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'교육·연구·진료사업'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'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함
- 회계법인 ○○에서 질의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고, 회계법인 ○○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0조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

### 질의

-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여부

### ■ 회 신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(변호사,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)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
**민·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**

사전법규부가-1001, 2023.01.19

**질 의**

- 민·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(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)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보조금(국비+지방비)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
- 1. 민간참여기관이 용역(데이터허브 센터 및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)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범위
- 2.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○○시청(전담기관)인지 ◎공사(주관기관)인지 여부

**회 신**

국토교통부와 ○○시(이하 "○○시")가 "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"(이하 "협약사업")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○○시·○○시 △△구·◎공사·민간참여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○○시로부터 협약사업과 관련된 보조금(이하 "보조금")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

- 1.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사용되어 도출되는 사업성과물은 ○○시에 귀속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○○시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해당 단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○○시로부터

터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.

- 2. 이 경우 민간참여기관은 ○○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.

**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, 슈퍼마켓,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**

서면소비-2117, 2023.01.17

**질 의**

- 질의법인은 가구 도소매업(쟁점사업장)을 영위하는 법인임
- 가구와 함께 와인, 치즈, 커피, 통조림, 스탠드, 액자, 카페트, 에어컨, 꽃병 등 물건을 나열하여 판매하고자 함

**질의**

- 가구판매업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가구와 함께 와인, 스탠드, 액자 등 상품을 같이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 판매업 면허대상이 되는지 여부

**회 신**

「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5항제1호가목의 백화점, 슈퍼마켓,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이란, 한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식료품과 일용잡화 등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상점으로서 백화점, 슈퍼마켓, 편의점 외 대형마트, 연쇄점, 농협매장 등이 있으며, 귀 법인이 질의한 사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